제108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5. 3. 25(수) 07:30

□ **장　　소** : 달개비(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옆)

□ **참 석 자** : 10명(이사 8명, 감사 2명)

◦ 이　사 : 이○○, 염○○, 정○○, 엄○○, 유○○, 원○○, 김○○, 류○○

◦ 감　사 : 김○○, 문○○

□ **심의안건**

◦ [제1안건] 서울연구원 정관 일부개정(안)

◦ [제2안건]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 [제3안건]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 [제4안건] 2014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

◦ [제5안건] 2014 회계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안)

□ **보고안건**

◦ 기금운용보고

[07:30]

○ **기획조정본부장** :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윤○○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사장님과 이사님 그리고 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로 취임하신 당연직 이사님과 11일 서울시 인사발령으로 당연직 이사로 임명되신 이사님, 16일 당연직 감사로 임명되신 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원◯◯ 총장님 입니다.
서울시 정책기획관이신 유◯◯님 입니다.
서울시 감사관이신 김◯◯ 감사님입니다.
김◯◯ 감사님은 감사원 재정경제1과장을 역임하셨으며, 3월 16일자로 서울시 감사관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오늘 이사회의 성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10분 중 8분이 참석하여 정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습니다.

○ **이사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연구원 제108회 정기이사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는「서울연구원 정관 일부개정(안)」및「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인사규정 일부개정(안)」,「2014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2014 회계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윤◯◯ 기획조정본부장으로부터 서울연구원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본부장** : [2015년 서울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설명

○ **이사장** :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장** : 업무보고 중에 민생의 무게를 덜어주는 연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뜻은 알겠는데 자칫하면 '민생의 무게를 덜어준다'라는 말이 민생을 가볍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어를 다르게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떨 까요? '민생의 짐을 덜어준다'든 지 '어려움을

덜어준다'든 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사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서울연구원 정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본부장** :「서울연구원 정관 일부개정(안)」 설명

○ **이사장** :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 : 서울시에서는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정관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삭제하는 것이 평생교육을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평생교육진흥원을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 좀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시행해 본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연구원에서는 이 기구를 삭제하고 저희가 별도 법인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립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 시민대학과 기능을 통합해서 평생교육 체계를 전체적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립대와도 협의를 할 예정이며, 일단 서울연구원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 **이사장** : 혹시 서울시에서 평생교육을 제외할까봐 염려되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 두 번째 안건으로,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본부장**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설명

○ **이사장** :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 :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능직이라 하면 보일러나 전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연구원은 사무보조를 기능직으로 하셨는데, 일반직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 **기획조정본부장** :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연구원에 기능직이 네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청사관리 업무 등 실제 기능 특수 업무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십니다. 이번 기회에 그 분들을 일정한 절차를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이사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원 장** : 총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전에는 기능직이란 표현과 직군이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부서를 돌면서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 문제를 겪으셨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을 바로 일반직으로 직군통합을 하지 않고 시험이나 교육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정원을 통합해 둘 필요가 있어서 이번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 **이　사** : 이번 안건과는 관련이 없는데, 투자분석직의 경우에도 직급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 놨는데, 정원은 3명 뿐 이네요.

○ **원　장** : 저희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만들면서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투자분석직을 만들고 정원을 3명으로 해놨는데 공공투자심의에 대한 요구가 계속 높아져서 일반연구직을 이 쪽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일반 연구직 포함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원을 굳이 늘리느니 통합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 추후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 세 번째 안건으로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본부장**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설명

○ **이사장** :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 : 갑과 을이라는 용어를 바꿀 뿐 아니라 실제 내용이나 관계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 **이　사** :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계약관계에 있어서 갑을이라는 용어를 효율성 때문에 써왔는데, 우리 사회에서 소위 '갑질'이라고 통칭되는 불합리한 문화를 상징하는 용어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서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서울연구원 뿐만 아니라 전체 계약관계에서 계약서에 갑과 을이라는 용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당사자 명칭을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를 갑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를 시라 한다.'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갑질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갑과을 용어 폐지를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질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형식을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사장**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 네 번째 안건으로 2014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혁렬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본부장** :「2014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설명

○ **이사장** : 회계법인 감사결과 적정하다고 보고되었는데, 감사이신 문미란 감사님께서 결산과 관련하여 검토하신 내용이나 참고 될 만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　사** : 회계법인에서 꼼꼼하게 봐주신 내용이어서 별다른 내용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익잉여금에서 15억이 기금으로 전출되어 안심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익잉여금에서 15억이 전출되고 기존의 10억과 합쳐 기금이 25억 정도가 되어 잘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사업규모도 커지고 예산도 커지고 연구도 많아지고 하면 잘 운영을 하셔서 비

율에 맞게 기금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 **이사장** : 기금확보가 좀 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원장님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감사관님께서도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 기금은 주로 어떤데 쓰이나요?

○ **원 장** : 현실적으로 기금을 다른데 쓰지는 않았고, 그동안 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기금의 일부를 좀 큰 규모로 두 차례 예산으로 썼던 적이 있습니다. 연구원 정도의 규모를 순수하게 기금으로 운영하려면 기금이 약 1조원정도 있어야 합니다. 연구원처럼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기금에 의존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독립성이 있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기금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일종의 비상금으로 긴급할 때 사용하거나, 시 재정이 어려워 졌을 때 쓸 수 있는 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 사** :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연구원 같은 데에는 기금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연구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는 대부분 연구비 대부분 사업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비로 되어 있으면 공사하듯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저희 학교 어떤 교수님이 3년짜리 사업을 받아서 2년 동안 연구를 수행하시다 더 큰 연구 사업을 수주를 받으셨는데, 두 가지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지 못해 이전에 하던 걸 관두시고 새로운 연구사업 쪽으로 가게 되셨는데, 그랬더니 사업이 안끝났는데 연구를 그만 뒀다고 사업비 받은 것을 개인이 반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말이 안되냐면 미국 같은 외국의 경우에는 연구비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주는 비용인데 우리는 사업비로 되어 있어 창틀 공사하듯이 공사가 안끝났는데 그만뒀다고 해서 이걸 반환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들한테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 기금이 있거나 하면 연구기금으로써 합목적적으로 연구기금으로 쓸 수 있는데 사업비 항목으로만 예산이 딱 되어 있으면 사업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연구소나 연구원, 연구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많이 있어야 연구의 목적으로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기금이 필요 합니다. 100억 이상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와는 다르게 연구원의 목적에 맞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금이 많이 확보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사장**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 원안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 마지막 안건으로 2014 회계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본부장** :「2014 회계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안)」설명

○ **이사장** :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장** :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보고안건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기획조정본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본부장** : [기금운용 보고] 설명

○ **이사장** : 본 안건은 결산안건과 연계된 사항으로 볼 수 있겠고 기금은 연구원에서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 **이사장** :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참석해주신 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제108회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